

예산총칙

제 1 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,633,052,793	146,358,680
일반회계	3,965,218,014	118,383,700
특별회계	667,834,779	27,974,980
기타특별회계	432,499,779	12,974,980
농어촌주택사업	16,205,810	486,170
의료급여기금	386,268,469	11,588,050
동부권특별회계	30,025,500	900,760
공기업특별회계	235,335,000	15,000,000
지역개발기금	235,335,000	15,00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,390,83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